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32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1132
-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다. 제안일 : 2019년 10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하 “제로페이”)이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100분의 5)를 감면¹⁾하도록 한 기한이 금년(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부칙 제2조).

※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시설 사용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안 제12조 제3항)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음(개정·시행 2019.5.2).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4호, 2019. 5. 2. >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7114호, 2019. 5. 2. >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 -----.

- 행정국은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제로페이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고자 제28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말(19.12.31)까지 공공시설 할인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안착을 위해 2020년 말까지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며,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방식임.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IMF 극복방안(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 내수소비·소득투명성 확대, 세금탈루 억제 등)의 부작용(무분별한 소비, 신용불량자 양산 등)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중간매개자-VAN²⁾와 PG³⁾-의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공공시설(시청 후생동 강당·다목적홀·직원식당, 소방서 강당·다목적실,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인재개발원 강의실·강당)에 대해 유희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역사박물관을 제외한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해 동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 공공시설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인재개발원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2) VAN(Value-Added Network)이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뜻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수많은 매장들과 카드사들이 일일이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VAN사는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카드승인 중계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매출데이터를 정리하고 제출된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대행한다. 이에 카드사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3) PG(payment Gateway)사는 온라인 카드결제 혹은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핸드폰, ARS,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모든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과의 결제중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PG사가 온라인가맹점과 최종당사자인 카드사를 직접 중계하지 않고 VAN을 거쳐 중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PG사와 VAN사, 카드사까지 3단계에 걸쳐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시 공공시설 유희공간 현황〉

구분	시설명	장소명	개방대상		관리부서
			개수	면적(m ²)	
본청	시청사	다목적홀	1	815	총무과
		직원식당	3	84	
		후생동강당	1	292	
사업소	은평소방서	강당	1	305	소방재난본부
	광나루안전체험관	다목적실	1	174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1	1,183	서울역사박물관
	인재개발원	강의실	3	185	인재개발원
		강당	3	649	

- 다만, 동 조례 개정이후('19.5)이후, 서울시 17개 유희공간에서 제로페이 결제 건수가 전무하여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감면 실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제로페이 유희공간 사용료 감면 실적〉

(단위 : 천원, '19.5월~9월말 기준)

구분	유희공간 수	전체결제		제로페이 결제		제로페이 사용료 감면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시	17	171	48,817	-	-	-
자치구	1,188	6,650	245,051	6	187	21

- 특히,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제로페이 결제를 위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구축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제285회 임시회에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부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하는 바, 계획성 부족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주는 전형은 아닌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계		5월		6월		8월		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결제(A)	4,498	48,177	483	7,489	472	6,451	573	7,237	1,365	10,524
제로페이(B)	231	6,151	28	927	31	832	32	1,346	83	1,069
이용률(B/A)	5.1%	12.8%	5.8%	12.4%	6.7%	12.9%	5.5%	18.6%	6.1%	10.2%
할인금액	770		117		106		157		155	

※ 8월, 시립미술관 데이비드 호크니전 정산 중으로 제로페이 실적은 포함되었으나 전체결제실적이 미포함되어 이용률 상승

- 이에 동 개정 사항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와 효과를 담보하기에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와 감면기한 연장(2021년 12월 31일 이후까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금번 정례회에 동 조례와 같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19건(참고자료①)의 조례안이 함께 제출되었는 바, 제로페이의 운영실적과 예약시스템구축 현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 개요

- 개방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12.7)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 ※ 시설 사용시 자격서류 확인
- 사용허가 제외대상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기간
 - 1일 1회 사용 기준
 -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사용경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http://yeyak.seoul.go.kr>) 접속



‘시설 대관’ 메뉴 선택



시설 검색



시설 예약

- 시설 사용료 및 냉난방 등 추가요금
 - 사용료 : 기준시간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기준사용료의 50%
 - 냉난방 등 추가요금 : 냉난방시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부과
 - 사용료 납부기한 :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이내(추가요금은 사용당일 부과징수)

참고자료 ①

연번	구분	조례명	감면대상	감면율
1	조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사용료: 10% 수강료: 5%
2	조례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등 입장료, 공원시설 이용료	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30% 이용료: 10%
3	조례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4	조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5	조례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시설 대관료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6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공양 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7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8	조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형 제작 비용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9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0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1	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설 등 이용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2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등 강습료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3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강당, 교실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4	조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5	조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6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및 서울영어마을 수유 관악캠프 이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7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8	조례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야영장소, 회의실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19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이용 시민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참고	규칙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규칙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학습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2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4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1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u>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4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u>2020년 12월 31일</u>----- -----.</p>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사업수입×30%(제로페이 이용자))×5%(이용료 감면)
- 한시적 적용 : '20.1~12(1년)

구분	사업수익 (18.1~12월)	제로페이 이용 결제 (30% 가정)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손실액 (5% 할인)	비고
금액 (단위 : 천원)	44,325	13,298	665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고성봉 (02-2133-5816)